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 안 번 호	2507
------------	------

2021. 6. 2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제안경위

- 2021. 5. 28. 장상기 의원 발의 (2021. 6. 1. 회부)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안 제2항제10호)
-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간판 표시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9호)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설정(안 제22조제1항제4호)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안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

4.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례 표준안(행정안전부) 개정을 반영하여 심의 처리기간 및 재심의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공동주택·의료시설 등 간판 총 수량 제외사항 및 그 표시방법을 규정하며, 이 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심의 처리기간 및 이의신청 사항 정비·보완(안 제22조제4항, 제23조제3항)”

- 광고물등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처리기간이 상위법에 규정되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개정, '21.1. 시행, 붙임1) 조례 표준안에 심의 처리기간 연장 및 재심의(이의신청) 사항이 보완되면서('21.4. 개정, 붙임2),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는 등 법 개정 및 조례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다고 보여짐.

조 례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u>15일</u> (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그	④ ----- ----- <u>20일</u> ----- -----

<p>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 ----- 20일 (소위원회는 10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 -----.</p>
<p>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신 설〉</p>	<p>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 다만, 심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에서(안 제22조제4항 단서) 일정 기한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수가 중복 기술되어 있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붙임3)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동일한 기한이므로 일정 기한은(20일(소위원회는 10일)) 삭제가 필요함.

“간판 총수량 제외 및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제2항제10호, 제4조제1항제9호)”

○ 시행령에서 간판의 총수량은 3~4개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방법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 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명칭을 -----.

가. ----- 2.4미터 -----

나. -----
-- 2.0미터 -----

다. (현행과 같음)

라. -----
----- 40센티미터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 즉, 간판 총수량 산정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 외에도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을 추가하고 그 표시방법을 정하는 사안으로, 현행 공동주택 명칭·동 표시방법과 비교해 보면 간판의 규격·돌출폭 등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됨.
- 집단적 건물군의 명칭·동 표시 필요성과, 점차 커져가는 주택·건물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간판 수량 산정 제외대상 확대와 표시방법의 다소 완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표시방법이 가로간판에 집중된 반면, 세로간판은 별도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채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조례 제4조제1항제9호마목), 공동주택 등 집단적 건물군의 도시경관 형성의 중요성과 가로간판과의 형평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세로간판의 표시방법도 일정 수준으로 이 조례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당연직 공무원 명시(안 제22조제1항제4호)”

-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배경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도시빛정책과장) 현재 공석인 가운데, 직무 대리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위원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위원회 규정이 있는 다른 조례들에서 일반적으로 당연직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례에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되어 있어²⁾ 사실상 당연직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해됨.

“총 합”

- 이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 및 조례 표준안 개정, 서울시 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여짐.
- 다만, 심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이 정리될 필요가 있고(안 제22조제 4항 단서), 공동주택 등 집단적 건물군의 세로간판 표시방법이 앞으로 이 조례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2)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법 개정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종 전)</p>	<p>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현 행)</p>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p>	<p>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p>
<p><신 설></p>	<p>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1.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변경신고: 5일</p>
<p><신 설></p>	<p>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p>

※ 종전에는 허가신고 처리기간이 시행령에(별지 제1호 서식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신청서) 7일(신고: 3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법에 허가 10일, 신고 5일, 심의대상 20일로 규정되고 이에 맞추어 해당 서식도 개정됨

<붙임 2> 조례 표준안 개정(심의 관련)

조례 표준안 (종 전)	조례 표준안 (현 행)
<p>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u>15일</u>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1회 15일</u>(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② ----- ----- <u>20일</u> ----- ----- 「<u>민원처리</u> <u>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1조에 따라 -----.</p> <p>⑥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u>30일</u> 이내에 도지사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p>

<붙임 3> 관련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허가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제6호·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제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제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9. 제5조에 따른 업소표지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9.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에는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명칭표시는 세로 1.8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나.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1.5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다.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아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수량·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바. 공동주택의 명칭 또는 동 표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판의 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 한다.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의 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 4> 조례 표준안 개정(간판 총수량 산정 제외 및 표시방법 관련)

조례 표준안 (종 전)	조례 표준안 (현 행)
<p>제2조(간판의 총수량)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조(간판의 총수량) ② ----- ----- ----- -----.</p> <p>8.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각 1개</p> <p>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 -----.</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p> <p>가.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p> <p>나.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p> <p>다.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p>

라.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